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ILO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종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작년 6월 개최되었던 제99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ILO 총회)는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이루어진 「가사노동자를 위한 관찮은 일자리 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의 초안을 채택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국제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과 권고안에 61개 국가가 지지하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큰 성과였다. 올해 이 협약과 권고안이 채택이 된다면 정부, 경영, 노동 3자가 함께 참여하는 ‘근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이 명백하게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던 가사노동자에게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회보호, 근로시간, 보상, 보건과 안전, 모성권, 근로감독, 취업중개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가사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사이의 동등한 대우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모든 사람에게 관찮은 일자리를’이라는 ILO의 슬로건이 모든 가사노동자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을 제100차 ILO 총회를 앞두고 기획특집에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아시아 지역의 가사노동자 근로조건과 조직화 현황을 소개한다. 작년 ILO 가사노동자위원회(Committee

on Domestic Workers)의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를 위한 노력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노동총회는 각국 정부 대표 및 노동계, 경영계 대표들이 2:1:1의 비율로 모여서 협약 등을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있다. 이 전체회의에서 가사노동자 문제를 준비한 곳은 가사노동자위원회인데,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25개의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수차례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다고 한다. 보통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해관계가 응집되어 있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영역인지를 알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보여주듯, 가사노동은 정의와 범위, 고용관계에서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나라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가사노동의 형태 또한 다르다. 보통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필요를 전달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규정하는 주객 관계가 모호하다.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인 만큼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보다는 인간관계, 감정, 호혜성이 노동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 질서와는 다른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입법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통한 규제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 행간은 세계 각국의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흥미로우면서도 우울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 가사사용인 등은 제외’를 못 받고 있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연동되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로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국내외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고용주들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제고가 그들의 고용 기회를 낮출 것이라며 우려한다. 아동과 여성과 고용주를 연계하고 중간착취하는 반인권적인 민간직업안내소도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사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주여성들이어서 인권과 관련한 국제분쟁의 여지도 높다. 전체

가사노동자의 인종적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여성의 규모가 가장 큰 아시아 지역 가사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움직임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협약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약 채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자 당사자의 조직화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가사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그늘에 있던 여성들이 노동권 쟁취를 위해 모여서 어깨 결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작년 10월 30일 돌봄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하여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법 통과를 목청껏 외쳤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서비스 확대와 여성 고용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자의 양적 확대는 꾸준할 전망이다. 가사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ILO 총회를 통해 기대해 본다. **KL**